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15. . . (제 회)	

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
폐지조례안

제출자	감사담당관 구 승 희
제출연월일	2015. . .

기획예산과장 심사필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동작골안전지킴이가 자율방재단으로 단체 통합이 완료됨에 따라 동작골안전지킴이 활동과 관련하여 현장민원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
1) 입법예고 (2015. 7. 2 ~ 7. 23)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심사대상 아님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동작구 감사담당관	
연 락 처	(02) 820 - 1167